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변경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8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및 법적 지위 변경 등(안 제7조)	4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다변화 등(안 제8조)	8
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명확화 등(안 제9조의2 신설)	10
4.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안 제11조의2 신설)	11
5.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방식 규정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13
6. 경찰청장 임명 및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 삭제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 삭제 등(안 제1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7. 19.
3. 회 부 일 : 2024. 0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게 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사무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고 있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의 인사 관련 절차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명은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과 그 외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등).
-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 경찰위원회의에 부친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 신설 등).
- 마.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와 경찰청장에 의한 재의 요구 및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의 추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6호).

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재의 요구하게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카.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변경 등(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u><신설></u>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u><신설></u>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하 이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로,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아님.¹⁾ 「정부

1)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유사하나,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점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구별됨.(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3. 12.)」, 397~400p).

조직법」 제5조²⁾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고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명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1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첫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및 경찰청의 지휘·감독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려는 것인데,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을 지휘할 경우 소속·감독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위원회 간 지휘·감독 권한이 충돌³⁾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경찰청의 소속과 감독기관이 불일치하게 되면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하 지휘·감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① 경찰청의 소속과 감독기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②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명령이 불일치할 경우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간의 업무중복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⁴⁾, 개정안과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속력 있

3)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문화할 경우,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 권한 등을 가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와 경찰청장의 사무 간에는 일정 부분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한 자치경찰사무와 달리 국가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닌 경찰청장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하여는 법안심사 시 기관간 사무분장을 고려하여 업무조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요건으로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다변화 등(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결격사유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5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3명은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총 7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은 상임인 정무직공무원임.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으로 유지하되, ①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② 5명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

하되,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함.

개정안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견제·감독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선임권자를 행정부 외 기관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의제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원 구성 시 그 지명권자를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으로 다변화하는 입법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음.

<위원 선임 입법례(대통령 임명)>

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회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전체위원 11명 - 대통령 지명 4명(상임1) - 국회 선출 4명(상임2) - 대법원장 지명 3명	방송통신위	▶전체위원 5명(모두 상임) - 대통령 지명(2) : 위원장 포함 - 국회 추천(3)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 15명 - 위원장(1)·부위원장(3): 총리제청 - 상임(3): 위원장 제청 - 비상임(8): 대통령(2), 국회(3), 대법원장(3)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위원 9명 - 위원장(1): 총리 제청 - 위원(4): 위원장 제청(상임 포함) - 국회 추천(4)

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명확화 등(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

현재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대행 순서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원장의 직무, 선출 절차 및 권한 대행 순서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현행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직무 등을 직접 명시⁵⁾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사무처)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정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현재 경찰청 기획조정관 소속 정책지원담당관(총경)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있음⁶⁾.

6) 「경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과학치안정책팀장 각 1명을 둔다.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는바⁷⁾,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사무처)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보임.

참고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소속 사무기구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음의 입법례가 있음.⁸⁾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사무기구의 장 임명 방식>

위원회	근거	임명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
금융위원회	시행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

※자료: 경찰청

-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직제 등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처리 지원 등은 경찰청(기획조정관)에서 현재 수행 중인 사무로서 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 등을 위한 사무처를 별도 설치할 경우 정부조직 간 기능 중복 및 불필요한 조직 남설 등 우려가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방식 규정 등(안 제10조제1항 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u><신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8의3.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의4.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사항 9.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0. 그 밖에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

현행	개정안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 <u>제10조의2(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재의에 관한 사항)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0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u> <u>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u> <u>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u> <u>⑤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u> <u>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u>	<u>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장</u>

현행	개정안
<u>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 요청하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운영,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10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10조의2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제10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재의 요구권 및 재의 요구에 따른 특별의사정족수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법률에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규정하고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경찰청장과 국무총리를

추가하고 있는데, 국가경찰 사무가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재의 요구권자로 한 것으로 보여짐.⁹⁾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 경찰청장의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의2제3항에 경찰청장의 재의요구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2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10조제1항제8호의4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 추천, 계급정년 연장,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9)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체계상 외청의 경우 주무장관이 지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에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의안번호 제2202009호, 한정의의원 대표발의

6. 경찰청장 임명 및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 삭제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 삭제 등(안 제1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찰청장) ① (생략) ② 경찰청장은 <u>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u>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⑩ (생략)	제14조(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2항에 따른 <u>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u> ,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 17. (생략) ② (생략)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경찰청장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의 추천----- ----- 7.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u>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u>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현행	개정안
<u>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u> ⑤ (생략)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u>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u> ③·④ (생략)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의</u>----- ----- -----.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경찰청장 임명 및 시·도경찰청장 임용 절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는 1991년 국회가 치안본부를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제34조제1항(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법」을 제정하여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입법 배경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경찰청의 행정안전부로부터의 독립을 더욱 지향하려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이고 주무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경찰청장에 대해 소속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을 전부 삭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¹¹⁾

참고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외청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¹²⁾을 제외하고는 청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임명 절차는 ‘소속 장관의 제청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¹³⁾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인사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로서,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 법무부 장관의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¹⁴⁾,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¹⁵⁾,

합동참모의장 임명 절차는 ‘국방부장관 추천 - 국무회의 심의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됨¹⁶⁾.

11)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28조제2항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 외에 국가경찰사무 및 수사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도경찰청장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설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인사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세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1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4)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5) 「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타 기관 입법례, 소속 외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에게 경찰청장 임용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 외에 국가경찰사무 및 수사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도경찰청장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설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

16)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